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제도 안내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는 법정 제도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미제출시 벌이익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다음의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보유사업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①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중분류)
261**	반도체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

②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 1)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9호 제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참조

제출 및 안내 문의처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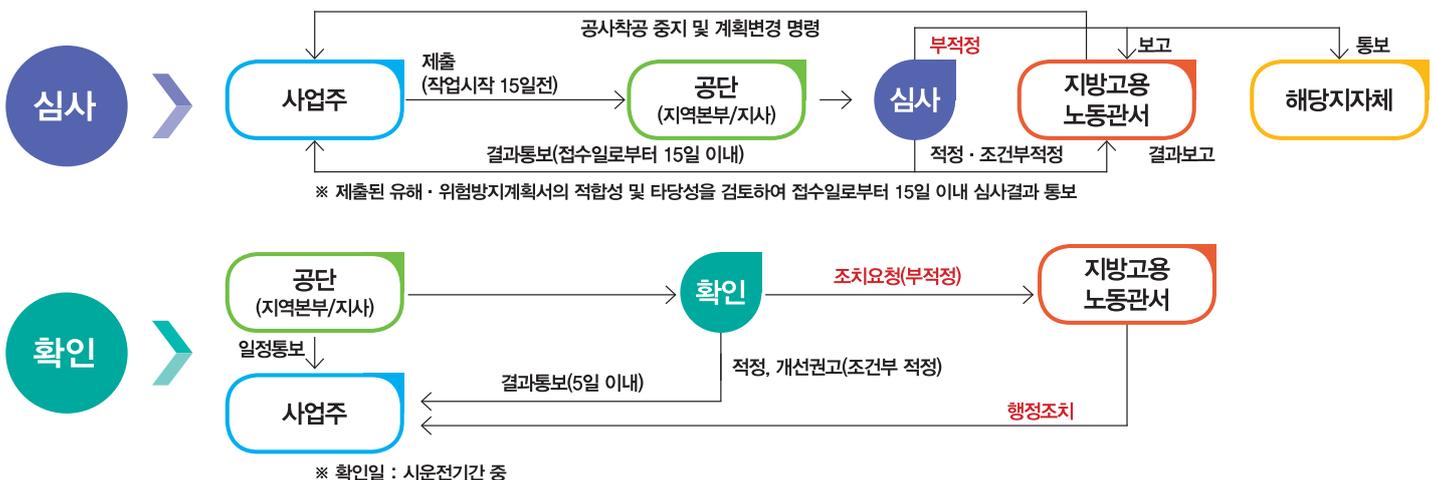
제출서류 | 신청양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1부는 가급적 전자문서로 제출)

제출시기 |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의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15일 전

안내문의 |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공단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가능)

- 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산업안전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 ▶ 사업안내

심사·확인 절차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 협의 안내



업무 협의 절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4. (생략)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 안전보고서의 심사

16.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제조시설 설치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②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조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제13조의 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청” 및 “공장의 건축 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는 각각 “제조시설 설치 승인신청”으로 본다.

⑤~⑥ (생략)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략)

②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3. (생략)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 안전보고서의 심사

③ (생략)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업무 협의 절차

+ 세우터 협의기관 협업시스템

① 협의 요청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소재지 : 서울특별시)

② 협의 대상 : 공장 건축물 및 2층 근린 생활시설(제조업소) 전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온라인 협의 (세우터 협업시스템)

